

장:(2000)사회개발비 관:(2200)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:(2210)보건·환경

세항:(2211)보건위생관리

세세항:(120)경상적경비

[본청][단위:천원]

과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금회 추경액	산출기초			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				
2000					[국 3,177,238	도 1,229,817	지 2,175,473	균 △814,000]	
사회개발비		228,676,195	215,235,656	13,440,539	[기 2,626,669	분 5,045,342	교 0]	
2200					[국 3,177,238	도 1,229,817	지 2,175,473	균 △814,000]	
보건및생활환경개선		228,676,195	215,235,656	13,440,539	[기 2,626,669	분 5,045,342	교 0]	
2210					[국 3,177,238	도 1,229,817	지 2,175,473	균 △814,000]	
보건·환경		228,676,195	215,235,656	13,440,539	[기 2,626,669	분 5,045,342	교 0]	
2211					[국 △80,935	도 1,544,132	지 0	균 0]	
보건위생관리		40,215,229	31,075,021	9,140,208	[기 2,631,669	분 5,045,342	교 0]	
100									
경상예산		204,438	194,438	10,000					
120									
경상적경비		204,438	194,438	10,000					
	202								
	여비	141,820	131,820	10,000					
		83,500	73,500	10,000	01 국내여비				
					○보건위생 업무추진 부족분			=	10,000
200					[국 △80,935	도 1,534,132	지 0	균 0]	
사업예산		40,010,791	30,880,583	9,130,208	[기 2,631,669	분 5,045,342	교 0]	
210					[국 △80,935	도 996,184	지 0	균 0]	
보조사업		28,717,006	25,170,088	3,546,918	[기 2,631,669	분 0	교 0]	
	201								
	일반운영비	121,037	262,895	△141,858					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금 회 추 경 액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121,037	262,895	△141,858	01 일반운영비
					○공중보건 의사(역학조사관) 지속교육
					4,417,000원 - 4,500,000원 = △83
					(국) △83
					○전염병관리자 과정 교육훈련
					2,550,000원 - 4,000,000원 = △1,450
					(국) △1,450
					○전염병관리 전담요원 위탁교육
					(국15,300,000원 + 도15,300,000원) - 28,900,000원 = 1,700
					(국) 850
					(도) 850
					○금연클리닉 운영평가(재원경정)
					(기4,383,000원 + 도4,383,000원) - 8,766,000원 = 0
					(도) 1,961
					(기) △1,961
					○에이즈예방 교육홍보사업
					(기5,264,000원 + 도5,264,000원) - 12,553,000원 = △2,025
					(도) △1,012
					(기) △1,013
					○고혈압·당뇨관리사업(과목경정)
					= △140,000
					(도) △70,000

과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금회 추경액	산출 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(기) △70,000
	202 여비	7,300	4,700	2,600	
		5,300	4,700	600	01 국내여비 ○ 전염병관리 교육 여비 (국200,000원 + 도1,000,000원) - 600,000원 = 600
		2,000	0	2,000	03 국외여비 ○ 건강생활실천사업 국외견학(성립전예산) = 2,000 (기) 2,000
	301 일반보상금	105,010	89,010	16,000	
		94,798	78,798	16,000	01 사회보장적수혜금 ○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입원치료 (국8,399,000원 + 도8,399,000원) - 20,798,000원 = △4,000 (국) △2,000 (도) △2,000 ○ 에이즈환자 진료비 (기37,000,000원 + 도37,000,000원) - 54,000,000원 = 20,000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금 회 추 경 액	산 출 기 초	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	(도)	(기)
						(도)	10,000
						(기)	10,000
	306 출연금	3,893,000	2,293,000	1,600,000	○지방의료원 장비보강	=	1,600,000
						(도)	800,000
						(기)	800,000
	307 민간이전	632,233	344,505	287,728			
		125,000	0	125,000	01 의료및구료비 ○외국인근로자·노숙자 무료진료사업(성립전예산)	=	125,000
						(기)	125,000
		482,233	319,505	162,728	02 민간경상보조 ○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 (기114,714,000원 + 도114,714,000원) - 215,000,000원	=	14,428
						(도)	7,214
						(기)	7,214
					○생물테러대비지정 감시 의료기관 운영(재원경정) (기14,620,000원 + 도4,620,000원) - 9,240,000원	=	0
						(국)	△4,620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금 회 추 경 액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(기) 4,620
					○ 표본감시 병원 정보관리비 3,200,000원 - 2,400,000원 = 800
					(기) 800
					○ 고혈압·당뇨관리사업(과목경정) = 80,000
					(도) 40,000
					(기) 40,000
					○ 응급의료인력인건비 지원 = 67,500
					(국) 67,500
	308 자치단체등 이전	13,122,849	11,486,211	1,636,638	
		12,972,849	11,336,211	1,636,638	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
					○ 임신부·영유아 건강진단 (기12,252,000원 + 도9,189,000원) - 8,627,000원 = 12,814
					(도) 5,493
					(기) 7,321
					○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(기144,345,000원 + 도108,259,000원) - 129,752,000원 = 122,852
					(도) 52,651
					(기) 70,201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금 회 추 경 액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(기260,800,000원 + 도195,600,000원) - 232,680,000원 = 223,720 (도) 95,880 (기) 127,840
					○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 (기225,000,000원 + 도112,500,000원) - 448,485,000원 = △110,985 (도) △36,995 (기) △73,990
					○한센병 양노자 생계비 (국47,496,000원 + 도47,496,000원) - 107,250,000원 = △12,258 (국) △6,129 (도) △6,129
					○예방접종(장티푸수외 5종) (기477,147,000원 + 도347,002,000원) - 780,772,000원 = 43,377 (도) 8,926 (기) 34,451
					○영유아 예방접종 (기356,304,000원 + 도178,152,000원) - 464,012,000원 = 70,444 (도) 23,481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금 회 추 경 액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(기) 46,963
					○암조기검진사업
					(기1,013,960,000원 + 도405,584,000원) - 1,326,884,000원
					= 92,660
					(도) 26,474
					(기) 66,186
					○암예방관리 105,780,000원 - 57,340,000원 = 48,440
					(기) 48,440
					○암사업관리 홍보 = △7,900
					(기) △7,900
					○금연클리닉 운영
					(기957,935,000원 + 도478,967,000원) - 746,973,000원
					= 689,929
					(도) 229,976
					(기) 459,953
					○건강생활실천사업(시군)
					(기947,000,000원 + 도30,000,000원) - 873,400,000원
					= 103,600
					(도) 30,000
					(기) 73,600
					○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
					(기231,600,000원 + 도115,800,000원) - 406,500,000원
					= △59,100
					(도) △19,700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금 회 추 경 액	산 출 기 초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	
					(기)	△39,400
					○고협암·당뇨관리 홍보사업 45,525,000원 - 51,187,000원	= △5,662
					(기)	△5,662
					○외국인 근로자 검진 및 치료비(부기경정)	= △3,280
					(도)	△1,093
					(기)	△2,187
					○성병검진 및 치료비(부기경정)	= 900
					(도)	300
					(기)	600
					○전염병관리자 과정 교육여비	= 300
					(국)	300
					○희귀·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(기1,506,508,000원 + 도301,302,000원) - 2,054,329,000원	= △246,519
					(도)	△41,086
					(기)	△205,433
					○아동·청소년 정신보건사업 (기27,980,000원 + 도13,990,000원) - 46,500,000원	= △4,530
					(도)	△1,510
					(기)	△3,020
					○치아홈메우기사업 (기185,625,000원 + 도37,125,000원) - 176,436,000원	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금 회 추 경 액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= 46,314
					(도) 7,719
					(기) 38,595
					○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
					(기185,678,000원 + 도37,136,000원) - 152,983,000원
					= 69,831
					(도) 11,639
					(기) 58,192
					○알콜상담센터 운영
					(기40,750,000원 + 도20,375,000원) - 180,000,000원
					= △ 118,875
					(도) △39,625
					(기) △79,250
					○정신보건 전문요원 양성 사업
					1,000,000원 - 1,500,000원
					= △500
					(기) △500
					○암치료비 지원
					(기582,917,000원 + 도233,167,000원) - 726,814,000원
					= 89,270
					(도) 25,506
					(기) 63,764
					○한방건강증진사업(HUB보건소 운영)
					(기88,000,000원 + 도44,000,000원) - 51,333,000
					= 80,667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금 회 추 경 액	산 출 기 초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	
						(도) 26,889
						(기) 53,778
						○지역보건사업 인력자원개발
						21,136,000원 - 18,509,000원 = 2,627
						(기) 2,627
						○임산부·영유아 영양보충사업(성립전예산)
						438,844,000원 - 228,000,000원 = 210,844
						(기) 210,844
						○에이즈감염자 등록관리 업무수행
						1,282,000원 - 4,043,000원 = △2,761
						(기) △2,761
						○금연교육 109,800,000원 - 150,000,000원 = △40,200
						(기) △40,200
						○보건소 예방접종 확대 시범사업(성립전 예산)
						221,487,500원 x 80% = 177,190
						(기) 177,190
						○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사업
						40,000,000원 x 2개소 x 50% = 40,000
						(기) 40,000
						○노인건강증진 HUB보건소운영 시범사업(성립전예산)
						85,126,000원 x 50% = 42,563
						(기) 42,563
						○도시보건소 시범사업 운영비
						= 80,866
						(기) 80,866

과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금회 추경액	산출 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402 민간자본이 전	292,193	0	292,193	
		292,193	0	292,193	01 민간자본보조 ○이동응급의료세트 교체 = 228,729 (도) 68,619 (기) 160,110 ○응급의료시설장비보강 = 63,464 (국) 63,464
	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	10,523,884	10,670,267	△146,383	
		10,523,884	10,670,267	△146,383	01 자치단체자본보조 ○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(42개소) (국7,136,763,000원 + 도1,784,191,000원) - 8,125,000,000원 = 795,954 (국) 636,763 (도) 159,191 ○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(10개소/13개사업) (국381,200,000원 + 도190,600,000원) - 1,824,282,000원 = △1,252,482

장:(200)사회개발비 관:(220)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:(2210)보건·환경

세항:(2211)보건위생관리

세세항:(210)보조사업

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금 회 추 경 액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(국) △834,988 (도) △417,494
					○구강보건실 설치(14개소) 262,500,000원 - 281,250,000원 = △18,750 (기) △18,750
					○한방건강증진사업 225,640,000원 - 182,262,000원 = 43,378 (기) 43,378
					○한센간이양로시설 신축 운영 (국128,195,000원 + 도128,195,000원) - 257,473,000원 = △1,083 (국) △542 (도) △541
					○도시보건소 시범사업 = 286,600 (기) 286,600
220					[국 0 도 537,948 지 0 균 0] [기 0 분 5,045,342 교 0]
자체사업		11,293,785	5,710,495	5,583,290	
	206 재료비	257,900	241,150	16,750	○병원선 낙도주민 진료 의약품 95,400,000원 - 78,650,000원 = 16,750
	306 출연금	1,420,000	1,210,000	210,000	○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지원 = 210,000

과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금회 추경액	산출 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307 민간이전	152,442	152,442	0	
		53,442	46,000	7,442	02 민간경상보조 ○결핵약품 보급 수수료 지원(과목경정) 8,488,000원 x 70% = 5,942 ○결핵관리 담당자 교육(과목경정) = 1,500
		99,000	106,442	△7,442	05 민간위탁금 ○결핵약품 보급 수수료 지원(과목경정) = △5,942 ○결핵관리 담당자 교육(과목경정) = △1,500
	308 자치단체등 이전	8,347,020	3,120,480	5,226,540	
		8,347,020	3,120,480	5,226,540	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○정신질환 요양시설 운영(지방이양)(성립전 예산) (교5,045,342,000원 + 도2,316,658,000원) - 2,135,460,000원 = 5,226,540 (도) 181,198 (분) 5,045,342 ○척추측만증 검진비(부기경정) = △45,000 ○전립선암 검진비(부기경정)

장:(2000)사회개발비 관:(2200)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:(2210)보건·환경

세항:(2211)보건위생관리

세세항:(220)자체사업

[본청][단위:천원]

과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금회 추경액	산출 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150,000,000원 x 30% = 45,000
	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	490,200	390,200	100,000	
		490,200	390,200	100,000	01 자치단체자본보조 ○건강증진센터 건립 200,000,000원 x 50% = 100,000
	405 자산취득비	31,798	1,798	30,000	
		31,798	1,798	30,000	01 자산및물품취득비 ○병원선 선외기 모터 교체 16,000,000원 x 1대 = 16,000 ○병원선 의료장비 구입 = 14,000
2212 환경관리		24,094,339	25,525,719	△1,431,380	[국 △96,997 도 △520,383 지 0 균 △814,000] [기 0 분 0 교 0]
	100 경상예산	107,690	92,690	15,000	
	120 경상적경비	107,690	92,690	15,000	
	202 여비	58,840	43,840	15,000	
		58,840	43,840	15,000	01 국내여비

장:(2000)사회개발비 관:(2200)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:(2210)보건·환경 세항:(2212)환경관리 세세항:(120)경상적경비 [본청][단위:천원]

과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금회 추경액	산출 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환경관리 업무추진 부족분 = 15,000
200	사업예산	23,986,649	25,433,029	△1,446,380	[국 △96,997 도 △535,383 지 0 균 △814,000] [기 0 분 0 교 0]
210	보조사업	21,231,520	23,146,200	△1,914,680	[국 △96,997 도 △1,003,683 지 0 균 △814,000] [기 0 분 0 교 0]
	307 민간이전	43,600	30,000	13,600	
		43,600	30,000	13,600	02 민간경상보조 ○체험환경프로그램지원 (국30,500,000원 + 도13,100,000원) - 30,000,000원 = 13,600 (국) 9,500 (도) 4,100
	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	20,422,920	22,351,200	△1,928,280	
		20,422,920	22,351,200	△1,928,280	01 자치단체자본보조 ○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 (국777,436,000원 + 도388,718,000원) - 1,340,900,000원 = △174,746 (국) △116,497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금 회 추 경 액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(도) △58,249
					○ 공공재활용기반시설확충 1,995,000,000원 - 2,070,000,000원 = △75,000
					(국) △75,000
					○ 12월 대설 및 강풍피해복구(성립전예산) = 85,000
					(국) 85,000
					○ 태안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= △1,646,600
					(도) △886,600
					(균) △760,000
					○ 금강생태공원 조성사업 (국412,000,000원 + 도480,666,000원) - 1,009,600,000원 = △116,934
					(도) △62,934
					(균) △54,000
220	자체사업	2,755,129	2,286,829	468,300	
	207 연구개발비	630,000	430,000	200,000	
		630,000	430,000	200,000	01 용역비 ○ 종합자연환경조사 용역 = 200,000
	307 민간이전	625,500	550,500	75,000	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금 회 추 경 액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장고도 해당화 군락지 조성 = 10,000
2213	수질관리	164,366,627	158,634,916	5,731,711	[국 3,355,170 도 206,068 지 2,175,473 균 0] [기 △5,000 분 0 교 0]
100	경상예산	78,610	70,610	8,000	
120	경상적경비	78,610	70,610	8,000	
	202 여비	40,000	32,000	8,000	
		40,000	32,000	8,000	01 국내여비 ○수질관리 업무추진 부족분 = 8,000
200	사업예산	164,288,017	158,564,306	5,723,711	[국 3,355,170 도 198,068 지 2,175,473 균 0] [기 △5,000 분 0 교 0]
210	보조사업	160,279,610	157,073,306	3,206,304	[국 3,355,170 도 △143,866 지 0 균 0] [기 △5,000 분 0 교 0]
	202 여비	13,230	18,230	△5,000	
		11,750	13,230	△1,480	01 국내여비 ○오염총량관리제 추진 및 목표수질 지점관리 8,520,000원 - 10,000,000원 = △1,480 (기) △1,480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금 회 추 경 액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1,480	5,000	△3,520	03 국외여비 ○오염총량관리제 선진지 견학 1,480,000원 - 5,000,000원 = △3,520 (기) △3,520
	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	160,266,380	157,055,076	3,211,304	
		160,266,380	157,055,076	3,211,304	01 자치단체자본보조 ○오수처리시설설치 지원사업(21개소) (국274,900,000원 + 도54,980,000원) - 317,076,000원 = 12,804 (국) 10,670 (도) 2,134 ○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(3개소) 29,164,500,000원 - 23,333,000,000원 = 5,831,500 (국) 5,831,500 ○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= △273,000 (국) △273,000 ○아름다운 화장실조성 인센티브 = 174,000 (국) 174,000 ○분뇨처리시설 보수보강사업 = △1,285,000 (국) △1,285,000

장:(200)사회개발비 관:(220)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:(2210)보건·환경

세항:(2213)수질관리

세세항:(210)보조사업

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금 회 추 경 액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국67,000,000원 - 1,316,000,000원 = △1,249,000 (국) △1,103,000 (도) △146,000
220					[국 0 도 341,934 지 2,175,473 균 0] [기 0 분 0 교 0]
	220 자체사업	4,008,407	1,491,000	2,517,407	
	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	3,700,407	1,183,000	2,517,407	
		3,700,407	1,183,000	2,517,407	01 자치단체자본보조 ○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= 2,447,407 (도) 271,934 (지) 2,175,473 ○하수도 정비 140,000,000원 x 50% = 70,000
세 출 합 계		228,676,195	215,235,656	13,440,539	